

공정한 거래 문화의 시작,

납품대금 연동제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CONTENTS 목차

1	납품대금 연동제 기본개념	 01
2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	 02
3	연동 약정 체결 의무의 예외	 05
4	올바른 연동약정을 위한 법정 필수 기재사항	 07
5	미연동 합의를 하는 경우	 18
6	불공정 거래 신고하기	 20
7	납품대금 연동제 실무 가이드	 22



납품대금 연동제의 기본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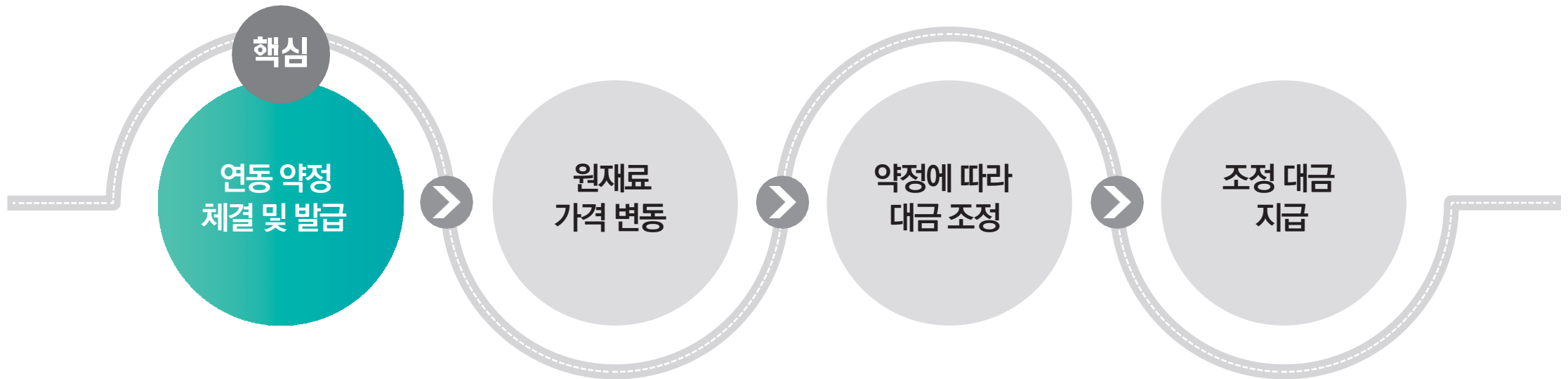


1

납품대금 연동제란?



-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 · 공사 · 가공 · 수리 ·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할 때
 ②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산식 등)을
 ③ 약정서에 ④ 기재하여 ⑤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⑥ 조정하여 ⑦ 지급하는 제도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4호」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



2 ▶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



적용대상 거래 ☞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 수탁·위탁거래란?

위탁기업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한 기업

물품등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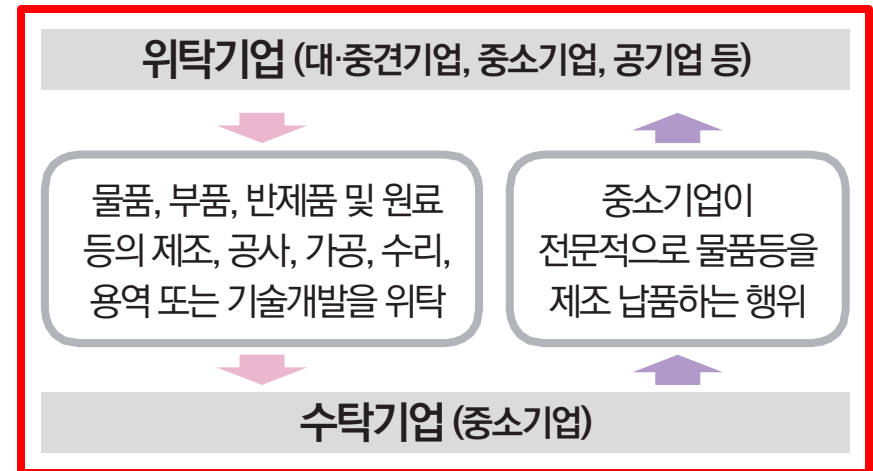
제조등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

위탁 물품등의 규격, 성능 등 상세 사양을 정하여 제조등을 위탁하는 것

※ 단순 구매 및 판매위탁은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수탁기업 위탁 내용에 따라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과 거래하는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포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2 ▶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



➤ (주요 원재료란?)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 납품대금이란 위탁기업이 물품등의 제조등 및 납품에 대한 대가로 수탁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함 (부가가치세 포함)

※ 1회 발주 금액이 아닌 1건의 계약당 총 납품대금이 기준

Q

원재료의 정의 및
범위는 무엇인지?

A

물품등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재료로서 원료와 재료를 포괄하고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음



Q

노무비와 경비도 주요 원재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A

노무비와 경비는 제외됨



➤ 원재료는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해 구매하는 원료와 재료

- ▶ 가공이나 용역이 투입됨으로써 최종재의 일부를 이루거나, 생산의 과정에서 그 형태가 변형되어 최종재에 결합하거나 **최종재의 구성성분**을 이루는 것
- ▶ 생산 과정에 사용되기는 하나 물리적·화학적으로 최종 물품등의 구성품을 이루지 아니하거나, 그 자체가 완성된 최종 물품으로서 독자적 기능을 가지는 물품은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음

➤ 원재료에는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

- ▶ 제조를 위해 수탁기업이 **기성품**을 구매하는 경우 기성품은 연동제의 대상 원재료에 해당
(예) 페인트 도장 공사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업이 구매하는 페인트도 원재료에 해당할 수 있음

연동 약정체결 의무의 예외



3

연동 약정 체결 의무의 예외



※ 다음 중 1가지에만 해당해도 연동 약정 체결 의무에서 예외

단기계약

수탁·위탁 거래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소액계약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소기업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미연동 합의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 1회 발주 당 납품기간이나 계약 경과기간, 납품금액 등이 아닌 1건의 계약 당 거래 기간 및 금액 기준

*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 할 수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소기업 기준 참조

(예) 1차 금속 제조업은 3년 평균매출액
120억원 이하일 경우 소기업

* 반드시 취지와 사유 등을
약정서에 명확히 기재

* 표준 미연동계약서 활용 가능





-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위해 필요한 원가 정보를 위탁기업에 제공하기를 원치 않음
- 원재료 가격 하락이 예상되어 납품대금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됨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의 자회사 관계인 경우
- 국가계약법 등 다른 법령상 의무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충분히 조정하고 있음
- 다른 주요 원재료에 대해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였음(복수의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 ▶ 이 외에도 개별 거래에 따라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며, 합의 시 성실한 협의를 거쳐 기재한 사유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진정한 의사가 잘 드러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바른 연동 약정을 위한 법정 필수 기재사항





➤ 연동에 필수적인 사항을 계약의 양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약정서에 기재

- (필수 기재사항 9가지)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기준지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요건, 조정주기, 조정일, 조정대금 반영일, 연동산식(반영비율)

➤ 시행일('23.10.4) 이후 신규 체결 또는 갱신 시 기존 계약에 특별약정 형태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





1 목적물등의 명칭

※ 상생협력법 제21조 제1항 제4호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한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목적물등)의 명칭

구분	기재사항(예시)
1. 목적물등의 명칭	동 케이블

- 하나의 물품군에 여러 상세 사양이 존재하고, 동일한 연동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기재할 수 있음

구분	기재사항(예시)
1. 목적물등의 명칭	윤활유(LO-001), 윤활유(LO-002), 윤활유(LO-003), 윤활유(LO-004),



2 연동 대상 원재료

※ 상생협력법 제21조 제1항 제4호

● 주요 원재료를 포함하여 납품대금 연동을 하기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

- * **(주요 원재료)**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 * **(원재료의 범위)** 천연재료(금, 철, 동 등), 화합물(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 등), 가공물(금속강, 금속판, 골재 등), 중간재(자동차 부품, 전기전자부품 등) 등을 포함
- * 수탁기업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무상사급자재는 포함되지 않음 (유상사급자재는 포함)

구분	기재사항(예시)
2. 연동 대상 원재료	동(銅)



③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 상생협력법 제21조 제1항 제4호

- ‘기준지표’란 원재료 **기준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
 -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LME, 한국은행 지표 등)가 원칙
- ‘**기준가격**’이란 기준지표에 따른 특정 시점의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

구 분	기재사항(예시)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월별 LME 고시가



> 기준지표 예시

※ 상생협력법 제21조 제1항 제4호

(기준지표 예시)

런던금속거래소(LME, London Metal Exchange), 한국은행(www.bok.or.kr),
e-나라지표(www.index.go.kr), 조달청(www.pps.go.kr),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고시하는 지표

(기준가격 예시)

가격 기준지표가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월별 LME 고시가인 경우,
'25년 1월 기준가격은 LME 고시가의 '25년 1월 평균 동 가격인 10,000원/kg

4 연동 계약서의 법정 기재사항



4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4조

- 원재료 가격의 변동을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구 분	기재사항(예시)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을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기준시점: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대금 변경이 없었던 경우, 약정 체결일)의 전월 (평균가격) - 비교시점: 이번 조정일의 전월 (평균가격)

(예시) '25년 1월 1일 약정 체결 후 2월 1일(조정일)이 도래한 경우, 이전에 대금 변경이 없었으므로
기준시점은 약정 체결일(1월 1일)의 전월인 '24년 12월(평균가격),
비교시점은 이번 조정일(2월 1일)의 전월인 '25년 1월(평균가격)이 됨



5 조정요건

※ 상생협력법 제21조 제1항 제4호

-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
- 변동률의 범위는 0 ~ $\pm 10\%$ 의 범위에서 양 당사자 간 협의하여 정함

구 분	기재사항(예시)
5. 납품대금 조정요건	$\pm 3\%$

(예시) 기준가격의 변동률이 1% → 조정요건 미충족으로 납품대금 연동 미시행,
 기준가격의 변동률이 5% → 조정요건 충족(3% 이상)으로 납품대금 연동 시행

4 연동 계약서의 법정 기재사항



⑥ 조정주기 및 ⑦ 조정일

※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4조

- 조정요건을 감안하여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 및 날짜를 기재

구 분	기재사항(예시)
6. 납품대금 조정주기	분기별, 1개월 등
7. 납품대금 조정일	분기별 마지막 일자, 매월 1일 등



4 연동 계약서의 법정 기재사항



8 조정대금 반영일

※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4조

-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

* 위탁기업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

구 분	기재사항(예시)
8. 조정대금 반영일	매월 1일

4 연동 계약서의 법정 기재사항



9 하도급대금등 연동산식

※ 상생협력법 제21조 제1항 제4호

- 연동에 따라 변경될 대금을 산출하는 산식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가이드북을 참고)

* 변동분의 반영비율을 100%로 정하는 것이 납품대금 연동제의 도입취지에 부합되나, 개별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구 분	기재사항(예시)
9. 하도급대금등 연동산식	변경 단가 (29,000원/EA) = 기존 단가 (25,000원/EA) + 원재료 변동가격* (2,000원/Kg) × 원재료 중량(2Kg/EA) × 반영비율 (100%) * 원재료 변동가격(2,000원/Kg) =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12,000원/Kg) - 기준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10,000원/Kg) ** 동(銅)을 제외한 원가 구성 내역의 금액은 5,000원으로 가정



➤ [하도급대금등 변동표]의 활용 방법

- 연동에 따른 조정된 하도급단가/대금을 **서면에 명확하게 기재**하고 상호 확인취지로 서명·기명 날인하여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을 예방**

◇ 연동 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25,000원

◇ 연동 약정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 10,000천원/ton

조정일	대상원재료	원재료 가격		하도급단가/대금		조정대금 반영일	원사업자 확인	수급사업자 확인
		기준 시점	비교 시점	조정전 금액	조정후 금액			
'25.2.1.	동	10,000 천원/ton	12,000 천원/ton	25,000원	29,000원	'25.2.1.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25.3.1.	동	12,000 천원/ton	13,000 천원/ton	29,000원	31,000원	'25.3.1.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조정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조정된 납품단가) 산식에 따라 조정된 납품단가를 확인

미연동 합의를 하는 경우



5 표준 미연동계약서의 주요내용



> 미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의 명칭

- 원칙적으로 주요원재료는 연동 대상이나, 위·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또는 예외사유(소기업, 단기계약, 소액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미연동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음

> 협의 개요

- 표준 미연동계약서 작성 시, 협의 일시·방법과 위·수탁기업의 협의 책임자 성명·직위를 기재

*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등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권한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

> 미연동 사유

- 미연동 사유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각각 기재하며, 다만 그 사유가 일치할 필요는 없음



표준 미연동계약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또는 납품대금(이하 “하도급대금등”이라 한다) 연동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이하 “원사업자등”이라 한다)과 수급사업자 또는 수탁기업(이하 “수급사업자등”이라 한다)은 아래 하도급계약 또는 수탁·위탁거래약정(이하 “하도급계약등”이라 한다)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미연동계약을 체결한다.

- ◇ 하도급계약등 명칭 :
- ◇ 하도급계약등 체결일자 :
- ◇ 미연동 대상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의 명칭 :
- ◇ 미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명칭 :
- ◇ 협의 개요 :
(협의한 일시/방법)
(원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수급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제1조(하도급대금등 미연동 합의)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위 하도급계약등의 주요 원재료에 대해 아래의 사유로 하도급대금등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미연동 합의”라 한다)한다.

미연동 사유	
원사업자등	
수급사업자등	

제2조(해석) 이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5조(준수사항)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3조(금지행위) ① 원사업자등은 미연동 합의와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등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등은 주요 원재료에 대해 하도급대금등 연동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등은 이에 응하여 연동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등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법인)번호 :

수급사업자등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인)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불공정 거래 신고하기





▶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

-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당해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제대로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 제보 센터**’를 운영
- 위탁기업의 불공정 행위 혐의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고 계신 경우 첨부를 요청

※ 사건 접수 및 처리가 어려운 경우

- ▶ 제보 내용이 수위탁거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 ▶ 제보 내용 또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 이미 신고하거나 처리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 ▶ 근거 없는 비방인 경우
- ▶ 타 부처 소관 법률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 등



▶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 방법

▶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

중소벤처24

home > 납품대금연동제 익명제보센터 >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불공정거래 상담 및 분쟁조정 신고 납품대금연동제 익명제보센터 관련법령 알림마당 자료마당

납품대금연동제 익명제보센터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2023년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당해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제대로 못하는 문제 해소를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주요 법 위반사항

- ① 위반기업이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약정서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발급한 경우
* 위반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 ②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기 위하여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하지 않은 경우
* (예시) 협의를 하지 않거나, 회색계좌, 익권교환 등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등
- ③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 약정을 체결할 의무를 피하려는 행위
* (예시)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의 발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또는 금액을 쪼개는 경우
- ④ 수탁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기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
- ⑤ 연동에 관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위박을 임의로 취소·변경하는 경우
- ⑥ 연동 약정에 따라 조정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보자의 IP 정보 등 부수정보가 별도로 저장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탁기업의 불공정행위 혐의에 대해서 옥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불공정행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고 게시 경우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제보 내용이 수·위탁거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내용 또는 대상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신고하거나 처리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근거 없는 비방인 경우, 타 부처 소관 법률과 관련된 사항 등의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하기 곤란하므로 유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익명제보센터는 조사 등 사건처리 과정에서 익명성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이에 따라 제 3자에 의한 제보자 신원 추정 방지 등을 위해 제보 처리기간, 조사대상/범위 등은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보하기

▶ 납품대금연동제.kr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하기 지원사업

소통·상담

공지사항 카드뉴스 납품대금연동제 FAQ 상담하기 불공정거래신고하기

홈 > 소통·상담 > 불공정거래신고하기

불공정거래신고하기

수위탁 분쟁 조정 신청하기 납품대금연동제 익명제보센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란?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드리는 곳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불공정거래신고센터로 연락주세요.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지원내용

- (불공정거래 상담) 수탁·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상담·신고(접수)·피해구제 방법(제도) 안내
- (법률자문 지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법률 검토 및 법적 구제 절차 등에 대한 전문 변호사 무료 법률자문 지원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1357+내선9
- (사전분쟁조정 지원)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수탁·위탁기업간 분쟁사안에 대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정 지원
-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 접수 및 조치) 불공정거래행위(상생협력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후, 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때에는 행정조치

중소기업의 든든한 지원군

불공정거래신고센터로 연락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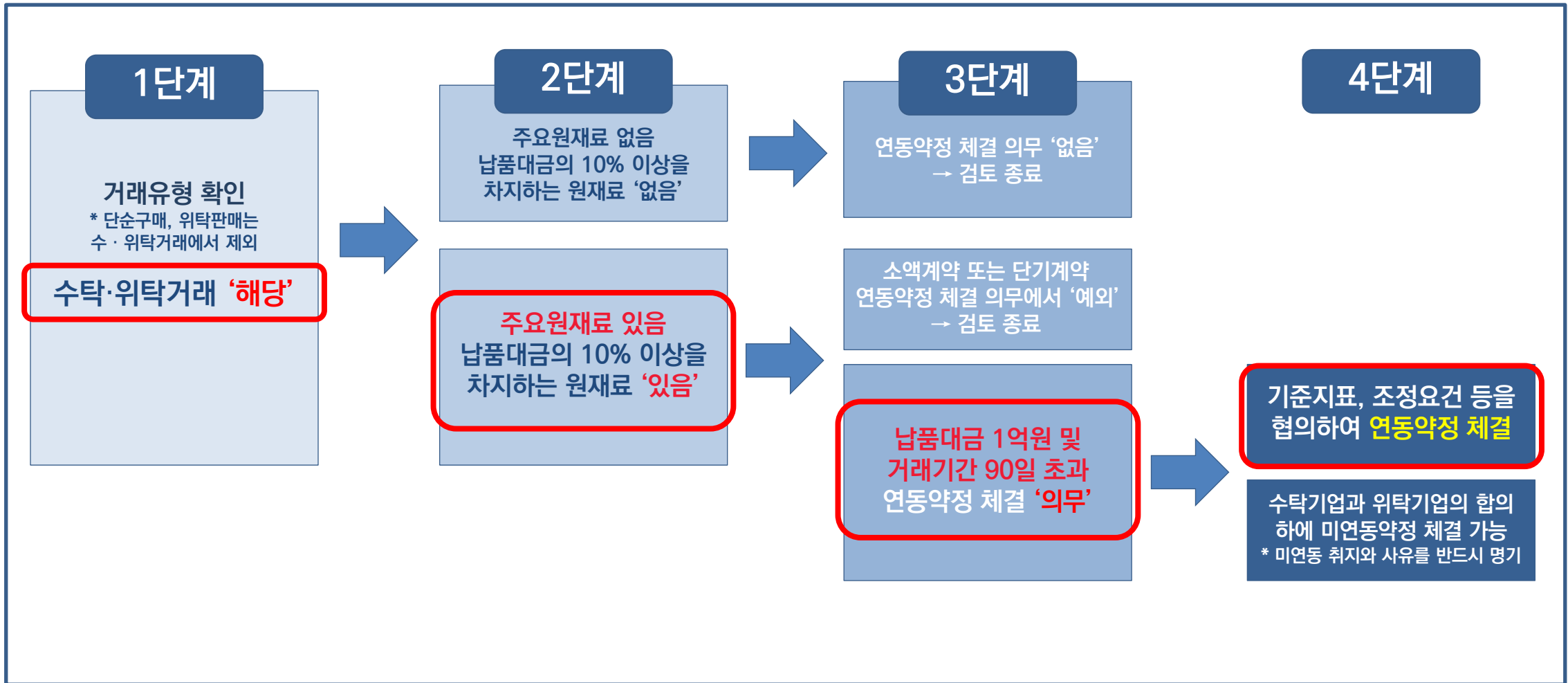
전문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 / 수·위탁거래 자율 분쟁조정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마무리] 납품대금 연동제 실무 가이드



7 ▶ 납품대금 연동제 실무 가이드



전담 변호사 상담

온라인상담 : 납품대금연동제.kr (한글도메인)

유선상담 : 02-368-8470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2-368-8460, 8962, 8969, 8929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134, 3131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031-628-9680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02-2230-2161, 2155

중소기업융합중앙회 042-331-0588

